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아동권리보장원 National Center for the Rights of the Child

아동권리보장원 5월 22일(금) 조간 (5.21. 12:00 이후 보도)

		_		
배 포 일	2	020. 5. 21.	/ (총 20매)	
보건복지부	과 장	변 효 순		044-202-3430
아동권리과	담 당 자	장 우 성	전 화	044-202-3441
아동권리보장원	부 장	한 명 애] 건 쪽	02-6283-0411
아동전디포정된 	담 당 자	손 희 윤		02-6283-0416

보건복지부, 가정위탁 보호율 높이기 위해 6대 과제 중점 추진

- 제17회 가정위탁의 날 비대면 온라인 행사(5.22.), 37명 유공자 포상 (장관 표창 28명) -
- 2024년까지 가정위탁 보호율을 37%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전문가정위탁제 도입 및 후견인제도 활성화 등 6대 과제 중점 추진 -

《 6대 과제 주요 내용》

- 보건복지부는 가정위탁 보호율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예비위탁부모 발굴확대 등 6대 과제를 지방자치단체(시행주체)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차질없이 시행
- ① (예비위탁부모 발굴·홍보 강화) 기존 친족위탁 탈피를 위해 일반위탁부모를 늘리고, 민·관 합동 공공캠페인 전개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교육 신설 추진
- ② (위탁가정의 지원 현실화) 아동용품구입비 지급 기준 신설(100만 원, 1회),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양육보조금을 연령별 차등 지급 기준으로 변경(20만 원(19년) → 연령별 30~50만 원(20년))
- ③ (전문가정위탁제도 본격 도입·위탁유형 다양화) 학대피해아동 등 특성을 고려한 보호를 위해 전문가정위탁제도 법제화, '전문가정위탁위원회' 구성· 운영, 선진국 수준 예산지원 기준 권고 및 일시위탁 도입 추진
- ④ (후견인제도 활성화) 친권자 친권상실 사유 구체화, 후견인 선임 신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역할 강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연계 법률구조지원 활성화
- ⑤ (원가정 조기복귀 지원) 아동의 원가정 복귀 지원을 위해 부모의 면접교섭권을 형제자매 등 가족까지 확대하는 근거 마련
- ⑥ (가정위탁 기반(인프라) 확대) 서비스 이용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전국 17개 가정위탁지원센터 인력 충원 및 분소 설치 등 추진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5월 22일(금) 「제17회 가정위탁의 날」*을 맞아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28명 등 가정위탁 유공자 및 관련 공모전 수상자 총 37명**에 대한 포상과 함께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 * 2003년 가정위탁제도 도입, 2004년부터 5월 22일을 '가정위탁의 날'로 지정·운영
 - ** 장관표창 28명, 장관상 9명(모범위탁아동 7명, 가정위탁 수기공모전 2명)
 - 올해 가정위탁의 날 기념식을 비롯한 각종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튜브·누리집(홈페이지)** 등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참고 1]
 - 기념식은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하며 전국 2만여 명의 위탁아동· 부모와 전 국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다.
 - * 유튜브 '아동권리보장원' 채널에서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 생중계
 - 아울러 가정위탁 행사를 위해 오는 20일부터 31일까지 11일간 누리집 (dayforchild.ncrc.or.kr)을 개설하여 축하 영상, 공모전 수상작 전시, 유공 포상자 소개, 모형집* 조립 행사 등 가정위탁 가치 확산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 * 위탁아동·부모가 함께 시는 집(정원) 모형을 만들며 위탁가정의 소중한 의미를 되새김
- □ 가정위탁 제도 운영과 활성화에 기여하여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한** 유공자는 28명이다.
 - 유공자 중 위탁모 홍삼숙씨는 2002년부터 지금까지 7명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문제행동에 대한 심리치료를 지원하고 위탁아동이 다니는 고등학교 학부모 대표를 맡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3명의 아동은 다시 친부모 품으로 돌아가게 했으며, 현재는 대학에 진학한 4명의 아동을 보호해 가정위탁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었다.
 - 김혜연씨는 2006년부터 장애(난치성 궤양증후군)가 있는 위탁아동을 14년 넘게 양육하며 언어 및 인지발달을 위한 치료를 병행하고, 사회성 발달을 위해 일반학교로 진학시켜 학업을 도우며 아동이 다양한 경험을 하도록 지원하였다. 2017년부터는 비슷한 처지의 어려운











아동에게 장학금을 후원하는 등 **자원봉사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여** 가정위탁 사업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이다.

- □ 한편 보건복지부는 아동권리 관련 국제규범*과 국내 법령·정책에 따른 선(先) 가정 보호정책 강화를 위해 2018년 기준 24%인 가정위탁 보호율을 2024년까지 37%**로 끌어올리기 위해 6대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1991년): 제3조 아동 최선의 이익 최우선 고려 등
 - ** 2018년 가정위탁 아동 937명, 2024년까지 약 1,500여 명 수준(목표)



- (1) 기존의 친족중심*의 가정위탁을 탈피하고, 가정위탁 활성화를 위해 예비 일반위탁 부모를 대폭 양성한다.
 - * 「민법」에 의한 8촌 이내 친인척가정 보호가 전체 가정위탁(1만f11명)의 91.8%(10,198명)(18년 기준)
 - ※ 가정위탁보호율: 25%('20년) → 28%('21년) → 31%('22년) → 34%('23년) → 37%('24년)
 - 보호아동이 시설보다는 가정에서 자랄 수 있도록 예비위탁부모를 추가 확보(약 500여 명*)하고, 위탁아동이 건강한 보살핌을 받도록









위탁부모에 대한 양성·보수교육을 강화**한다.

- * 우선적으로 베이비박스 유기아동에 대한 전문가정위탁 보호체계 확립 추진
- ** 교육시간 확대: 4시간('19년) → 5시간('20년), 전문위탁 양성교육 20시간 신설
- 가정위탁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한 민관합동 공공캠페인을 전개하고, 지방자치단체 담당공무원 지침(매뉴얼) 배포 및 교육 과정 신설을 검토한다.
 - * 지역 단체, 축제 및 캠페인 등 타킷 홍보, 전국적 라디오, 케이블 및 공중파 등 매체광고. 홍보대사.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 온-오프라인 홍보 다각화
- (2) 사회적 양육 분담을 실천하는 위탁가정에 대한 지원 현실화를 위해 신설 또는 상향한 양육비 권고기준의 지방자치단체 이행을 독려한다.
 - 위탁 초기에 필요한 생필품 구입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 용품구입비 지급기준(최초 1회, 100만 원)을 신설하였다.
 - 아동의 연령에 따라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인 기준으로 지원**했던 **양육보조금을 연령대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 * 위탁아동의 상급학년 진학부터 교육비(과외 활동비, 교재비 증), 의류비, 식비, 교통비, 용돈 등 추가 요구되는 양육비 발생

【 아동용품구입비 신설 및 양육보조금 지원 확대】



- 참고로 위탁가정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아동용품구입비, 양육보조금** 및 전문아동보호비 등을 지원받고, 국가사업으로 디딤씨앗통장, 상해 보험료, 심리검사·치료 등을 지원받고 있다.











- 생계·의료·교육 급여, 아동·양육수당, 전세자금 등 간접적으로도 다양한 지원을 받는다. [참고 3]
- 그러나 지역별로 지원규모의 **편차*가 커 가정위탁 활성화 추진** 성과가 더디게 나타나 지자체 관련 협의회·평가를 통해 적극적인 역할을 확보해 나간다. [참고 4]
 - * 양육보조금(12~20만 원), 전문아동보호비(15~50만 원), 자립정착금(대전 5.000~ 수원 1,000만 원), 대학등록금(광주, 대전, 경기, 충남, 경남 0~500만 원) 등
- (3) 전문가정위탁제도를 보편적 위탁유형으로 도입하고, 위탁가정 유형을 다양화한다.
 - **학대피해 아동**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맞춤형** 보호를 위해 전문가정위탁제도를 위탁유형으로 법제화한다.
 - * 2018년 기준 위탁아동 중 학대/방임 피해아동 249명, 경계선 지능아동 78명, 36개월 미만 영아 94명 등 총 421명
 - ※ 전문가정위탁 시범사업(2017년): 대구, 전북, 충북, 부산에서 시범 운영결과 문제행동. 정서불안 및 과잉행동장애(ADHD) 감소 등 유의미한 긍정적 변화 확인
 - 아동권리보장원 내 '전문가정위탁위원회'를 두어 아동별 맞춤형 사례관리를 위한 적합한 보호프로그램을 설계하도록 한다.

【전문가정위탁 아동의 맞춤형 통합 사례관리 서비스(예)】



※ 보호대상 아동별, 보호 주체별(친부모, 위탁부모 및 기관별) 역할 정립 등 **맞춤형 운영계획 수립** (최초 사정자료를 기초하여 배치 후 1개월 이내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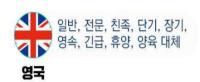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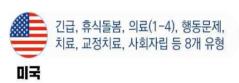




- 또한 **한해 130여 명씩 발생하는 베이비박스 유기아동**에게는 시설 보호보다는 전문적인 가정보호가 최우선 되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의 유기아동 성(姓)・본(本)창설과 보호아동 배치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다.
- * 베이비박스 유기아동의 대부분(70.6%)이 시설보호('19년 발생 현황 : 130명)
- 전문가정위탁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선진국 수준*의 양육비 지원기준(전문아동보호비 월 100만 원)을 올해 초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으며, 전문가정위탁 지침(매뉴얼)을 올해 중 배포한다.
 - * 미국 오레곤주의 기본 위탁보호 지원금은 0~5세 \$575, 6~12세 \$655, 13~18세 \$741이며, 별개로 아동 특성별 추가지원금(\$212~\$850), 개인돌봄서비스, 교통비 등 지원
 - 위탁부모의 **질병 등으로 인한 양육공백 해소를** 위해 **다른 위탁 가정에 일시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 보호기간별(단기·장기·영구 등) 새로운 위탁유형 도입도 검토한다.

【외국의 가정위탁 유형】







- (4) 위탁아동·위탁가정의 복리향상을 위해 정책 보완과 법률서비스 지원 등을 강화한다.
 - 위탁아동의 법적 권한 부재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친권자 친권상실 사유를 구체화(연락 두절 또는 소재 불명)하는 등 후견인제도를 활성화해 나간다.
 - * 「아동복지법」제18조: (현행) <u>그 밖에</u>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 → (변경) <u>연락두절 또는 소재불명 등</u>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
 - 후견인 선임 신청에 대한 **지자체·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고,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연계한 법률구조지원**을 활성화한다.
 - * 친권자 또는 후견인 부재 아동은 지자체에서 후견인 선임 청구를 실시
 - ** 심판 지원(인용 총 34건) : 6건('16) → 6건('17) → 17건('18) → 19건('19)









- 과잉행동장애(ADHD), 정서불안장애 등 행동·정서적 문제를 가진 아동의 심리검사·치료비를 지속 지원하고, 위탁부모도 심리치료 (양육상담)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 또한 가정위탁아동의 예기치 못한 사고 및 질병에 대비하여 지원하고 있는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의 보장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20년 12개에서 15개*로 확대)
 - * '20년 보장성 강화(추가사항): 골절발생위로금, 폭력피해위로금, 식중독위로금
- (5) 친부모가 있는 아동의 원가정 조기복귀를 위해 아동과 가족*간의 정기적 면접교섭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한다.
 - * 「민법」상 부모의 면접교섭권을 형제자매 등을 포함한 가족으로까지 확대
 - 또한 친부모에 대한 정기상담, 친부모·아동 교류 프로그램 운영 개발, 친가정·위탁부모 교육 등 친가정 복귀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한다.
- (6) 서비스 이용의 접근성·형평성을 고려하여 **전국 17개 가정위탁 지원센터의 인력 충원 및 분소 설치 등** 가정위탁 인프라를 확대해 나간다.
 - 인력기준 완화*를 통해 부족한 인력 충원을 유도하고, 위탁아동 수 ('19년 12월 기준)를 고려, 경기(위탁아동 1,000명 이상), 강원·전남(위탁아동 900명 이상), 경북·서울(위탁아동 800명 이상)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분소 설치를 추진해 나간다.
 - * 상담원 배치기준 : 센터당 6명 + 위탁아동수가 400명을 초과 시 200명 초과 시마다 1명 추가배치(「아동복지법 시행령」 제47조)
 - ** ('19년) 17개소, 분소 없음 → ('20년~) 분소 설치 추진









- □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위탁아동을 가슴으로 품고 내 자식처럼 양육하고 계신 전국의 위탁부모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정부는 위탁부모님의 양육 부담을 덜어드리고 우리 아동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아울러 "가정위탁 6대과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지방자치 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 □ 아동권리보장원 윤혜미 원장은 "가정위탁의 날 기념 온라인 행사를 계기로 가정위탁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한층 더 높아지고, 위탁부모님들과 후원자들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기를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 가정위탁 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가정위탁 문의(전국 1577-1406) 또는 관할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참고 5]에서 확인할 수 있다.

- < 참고 > 1. 「제17회 가정위탁의 날」 기념행사 개요 및 포상자 명단
 - 2. 가정위탁사업 개요
 - 3. 가정위탁아동 주요 지원내용
 - 4. 각 시·도별 가정위탁사업 지원내용
 - 5. 전국 가정위탁지원센터 현황











참고 1

「제17회 가정위탁의 날」 기념행사 개요 및 포상자 명단

□ 행사 개요

- (목적) 가정위탁 보호제도 운영과 관련된 위탁부모·아동, 종사자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격려와 사기 진작을 통해 가정위탁 보호 활성화 촉진
- **(일정)** 온라인 생중계 행사 : **5.22.(**금**)** / 홈페이지 운영 : 5.20.(수) ~ 5.31.(일)
- (주최) 보건복지부, (주관) 아동권리보장원

□ 행사 내용

- 가정위탁의 날 홈페이지 운영(http://dayforchild.ncrc.or.kr)
 - ※ 아동권리보장원 「어린이날, 입양의날, 가정위탁의날, 실종아동의날」 4개 온라인 기념행사 통합 개설, 5월 해당주간 순차적 오픈

홈페이지 구성					
메뉴	내용	세부내용			
1. 가정위탁이야기	가정위탁 소개	- 가정위탁이란 - 가정위탁의 날이란 - 위탁가정이란 - 가정위탁지원센터는 - 전국가정위탁지원센터 현황			
2. 상영관	홍보영상, 축사, 스토리	- 가정위탁 이야기(수기활용) - 가정위탁의 날 축사 - 가정위탁 소개 - 가정위탁 스토리			
3. 유공자포상	가정위탁 유공포상자 소개	- 가정위탁의날 기념 유공포상자 소개, 수상소감			
4. 가정위탁 수기	수기공모전 수상작 전시	- 가정위탁 수기 공모전 수상작 소개			
5. 이벤트	가정위탁의 날 이벤트 안내	- 가정위탁 웹툰 사행시 참여 - 미니정원 조립키트 사진 업로드			
6. 온라인기념행사	유튜브 라이브 행사 안내	- 유튜브 라이브 행사 사전안내 및 url 제공			











○ 온라인 생중계 행사

온라인 생중계 행사(5 /2 2)					
순서	구성	세부 내용			
	개식선언	제17회 가정위탁의날 기념행사 개식선언			
	홍보영상	가정위탁 홍보영상(수기활용) 송출			
본식 행사	기념사	보건복지부 장관 기념사 영상 송출			
	인사말	아동권리보장원 원장 인사말			
	축사	주요 인사 2인 축사* 전화연결			
이타기과 이디브	유공포상자	유공포상자 1인 전화연결			
위탁가정 인터뷰	공모전 수상자	수기공모전 수상자 2인 전화연결			
축하공연	생방송 콘서트	가수 이도진 축하 공연			
이벤트	사전·현장 이벤트	다양한 이벤트 진행 및 사은품 발송			
클로징	마무리 인사말	사회자 진행			

* 축사 진행

가정형 보호제도 홍보대사		주 요 이 력
가정위탁 홍보대사 (디자이너 이상봉)	제 16 회 가정위탁의 날	 2012년 가정위탁 홍보대사 위촉 매년 가정위탁의날 기념식 참석 및 협조 위탁아동을 위한 디자인 의류 및 소품 등 비정기적 기부 행보(구.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시) 위탁아동과의 토크콘서트 진행(2017년)
입양 홍보대사 (배우 신애라)	でいるのがおおります。	 2019년 입양 홍보대사 위촉 2019년 국민훈장 동백장 수여 2005년, 2008년 공개입양 및 2011년부터 입양과 아동의 가정형 보호 필요성에 대한 소신을 매체에 전하고 있음











□ 장관표창 대상자 명단(28명)

연번	소 속	직책등	성 명	공 적 요 지
1	강원도가정 위탁지원센터	위탁부모	이이순	일반위탁부모로서 2000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총 5명(1명 친가정 복귀, 3명 자립, 1명 양육 중)의 위탁아동을 보호 하며 건강한 성장 및 자립을 위해 헌신적으로 양육하고, 위탁아동들이 다양한 교육과 문화프로그램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함.
2	경기북부가정 위탁지원센터	위탁부모	홍삼숙	2002년 05월부터 현재까지 17년 9개월 동안 7명의 위탁 아동을 양육하였음. 7명 중 3명은 친가정으로 복귀하였 으며 현재 4명의 아동들을 가정위탁보호하며 위탁아동 양육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함.
3	강원도가정 위탁지원센터	위탁부모	최분옥	일반위탁부모로서 2000년 4월부터 현재까지 가정해체로 인해 친부모의 양육을 받을 수 없는 장애아동을 15년간 양육하며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함.
4	전남가정 위탁지원센터	위탁부모	양서자	일반가정위탁으로 약 14년 동안 2명의 요보호아동을 위탁 양육하여 1명을 자립시켰으며 현재 1명의 위탁아동을 성실히 양육하며 가정위탁사업 활성화에 공헌함.
5	제주가정 위탁지원센터	위탁부모	김혜연	위탁아동이 장애(졸링거앨리슨 증후군)가 있어 많은 보살핌이 필요함에도 자신의 가족과 똑같이 희생하여 14년간 양육하고, 2017년부터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에 정기적으로 후원하여 가정위탁 사업 발전에 기여함.
6	광주가정 위탁지원센터	위탁부모	정순옥	위탁아동을 14년 동안 양육하면서 친가정과 위탁아동 관계 회복을 위해 만남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위탁부모 자조모임 및 교육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가정위탁사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함.
7	울산가정 위탁지원센터	위탁부모	이옥분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아동의 재능지원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면서 아동이 구김없이 건강한 인성을 가지고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함.
8	경기가정 위탁지원센터	위탁부모	최정복	위탁모는 무연고 아동을 8세부터 현재까지 13년 8개월 간 건강하게 양육하고 있으며 위탁부모 교육, 자조모임, 각종 가정위탁 관련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여 다른 위탁부모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등 가정위탁사업 활성화에 기여함.
9	전북가정 위탁지원센터	위탁부모	김경란	'09년부터 11년간 총 4명(2명 친가정 복귀, 2명 양육 중)의 위탁아동을 양육함. 평소 주변 지인을 가정위탁에 동참 하도록 독려하고 자조모임 회장으로서 가정위탁지원센터 내 활동에 성실히 임하며 가정위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함.











연번	소속	직책등	성 명	공 적 요 지
10	대구가정 위탁지원센터	위탁부모	박남수	2011년부터 8년 동안 2명의 위탁아동을 양육 중임. 위탁아동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키고 따뜻한 가정을만들어 주기 위해 위탁부모교육에 성실히 참여하고 2018년부터 가정위탁부모대표회의 '해담이'로서 정책제안활동에도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등 가정위탁보호제도활성화에 크게 기여함.
11	아동권리 보장원	종사자 (대리)	손희윤	2012년 4월부터 8년 동안 가정위탁 인식확산을 위해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사업지원팀, 대외협력파트에서 가정위탁 홍보 및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며 외부 자원 연계활동에 힘쓰는 등 가정위탁 활성화에 크게 기여함.
12	경남가정 위탁지원센터	위탁부모	방영숙	'12년 7월부터 3명의 위탁아동을 양육(1명 친가정 복귀, 2명 양육 중)하여 아동에 대한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가정위탁사업 홍보에 적극 참여하여 일반가정위탁활성화에 기여함.
13	전라남도 목포시 여성가족과	공무원 (지방사회 복지서기)	장혜자	요보호아동 발생 시 가정위탁 보호조치, 자립지원 및 후원자 발굴을 위해 노력함.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아동 맞춤형 복지를 지원하고, 위탁가정 교육 및 지원제도 홍보 등 가정위탁 활성화에 기여함.
14	대전가정 위탁지원센터	위탁부모	이명숙	친부모가 부재한 위기가정의 위탁아동을 2013년부터 7년간 안정적으로 보호·양육하면서 위탁아동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는데 공헌함.
15	경기가정 위탁지원센터	종사자 (과장)	전은경	2012년부터 현재까지 가정위탁사업에 종사하면서 위탁 아동들의 사례관리 및 친부모의 역량강화를 통해 아동이 안정적으로 친가정 복귀하는 것을 도우며 아동복지 증진 및 가정위탁 활성화에 기여함.
16	부산가정 위탁지원센터	위탁부모	김경자	약 5년 7개월 동안 3명의 위탁아동을 양육 중임. 가정위 탁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부모교육 사례나눔강사로서 예비위탁부모에게 아동양육에 대한 강의를 하는 등 다양한 가정위탁 사업에 참여하여 타인의 귀감이 됨.
17	광주가정 위탁지원센터	종사자 (과장)	박혜지	가정위탁아동 및 부모에게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호대상아동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자립연령에 도달한 보호종료아동이 자립에 성공할 수 있도록지원하는 등 가정위탁보호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함.
18	충남가정 위탁지원센터	종사자 (상담원)	정소희	충남가정위탁사업의 일반위탁가정 관리와 연계, 위탁부모 교육, 가정위탁 홍보 캠페인활동, 자원구축 등 아동권익실현 및 위탁사업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 함.
19	현대자동차 선비대리점	후원사	현대자동차 선비대리점	가정위탁아동에게 디딤씨앗통장 결연후원금 지원, 겨울 이불·건강보조식품·마스크 등 후원물품을 지원하여 아동의 건전한 성장·발달을 위해 크게 기여함.









연번	소속	직책등	성 명	공 적 요 지
20	서울가정 위탁지원센터	위탁부모	이현정	아동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2014년 11월부터 2020년 4월 현재까지 가정해체로 인해 친부모로부터 안정적인 양육을 받을 수 없는 위탁아동 2명을 헌신적으로 양육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 일반위탁부모 자조모임 회장으로 활동하며 가정위탁사업 발전에 기여함.
21	부산가정 위탁지원센터	종사자 (팀장)	임가람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자립지원팀장으로서 위탁아동들의 자립을 위해 다양한 교육 및 자원을 연계하고자 노력하여 가정위탁 활성화 및 아동복지 향상에 기여함.
22	충남가정 위탁지원센터	위탁부모	현해란	2015년 5월부터 7개월 남자아동을 4년 11개월 동안 양육함. 장애를 갖고 있는 위탁아동을 밤낮으로 돌보며 적합한 성장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타 위탁 부모들의 모범이 됨.
23	충북가정 위탁지원센터	위탁부모	김순덕	양육시설에서 일시보호 받던 아동과,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의뢰된 학대피해 아동(장애)을 4년 10개월 간 사랑으로 양육 중임. 특히 1년간 전문위탁부모로 활동하는등 가정위탁제도의 발전에 크게 기여함.
24	서울특별시 중랑구 여성가족과	공무원 (지방사회 복지서기)	고우리	가정위탁보호 대상아동의 적극적인 발굴 및 신청 유도, 격려품 전달, 개별 보호관리계획 수립 등 가정위탁제도의 활성화 및 보호아동 복지 향상에 기여함.
25	충북가정 위탁지원센터	위탁부모	박현규	2015년 11월부터 위탁부모로 책정되었으나 장애아동과 일반위탁아동을 20년 이상 사랑과 헌신으로 양육 중임. 위탁아동의 장애에 대하여 먼저 언어치료를 제안하여 치료하는 등 타 위탁가정의 모범이 됨.
26	경남가정 위탁지원센터	종사자 (대리)	이광우	4년 3개월 동안 가정위탁보호아동에 대한 최적의 서비스 제공, 가정위탁사업 인지도 향상을 위한 캠페인 및 홍보, 인적·물적 자원연계, 위탁아동 및 위탁가정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위탁아동의 복지 향상에 기여함.
27	울산가정 위탁지원센터	위탁부모	박복이	위탁아동들의 친모가 갑작스럽게 사망하여 2016년 9월 부터 손자녀 2명을 위탁양육함. 고령으로 생계활동 어려 움에도 불구하고 위탁아동들을 적극적이고 헌신적으로 양육하고 있어 건강한 위탁부모상을 제시함.
28	충북가정 위탁지원센터	종사자 (대리)	이희태	2016년 12월부터 3년 5개월 동안 위탁가정 사례관리, 자립지원, 자원개발 등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위탁 아동의 자립과 인권 향상에 기여하고, 충북도민, 유관기관, 예비위탁가정 등 주변을 독려하고 홍보하는 등 가정위탁 사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함.











□ 모범 위탁아동 장관상 수상자(7명)

연번	성명	학년	수상사유
1	이 ○ ○	고 2	아동은 친부모의 방임과 가정폭력으로 인해 어려서부터 조모와 고모의 보호 하에 생활하였음. 장애와 심적으로 힘든 시기를 판소리로 딛고 일어나 국악 명창의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
2	양ㅇㅇ	코 3	아동은 가정생활 및 학교생활에 모범이 될 뿐 아니라,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과 목표를 갖고 이를 이루고자 교내 시사토론대회 및 자서전쓰기대회 참여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음. 또한, IOT분야 취업을 위한 스마트 화분 제작 등 팀프로젝트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자립을 준비하고 있음
3	백〇〇	고 1	아동은 친인척위탁아동으로 매사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울산 꿈 비전발표대회, 초록우산 편지쓰기 공모전 등 다양한 활동 참여와 도전을 이어나가고 있으며, 캐릭터 공모전 특선 등 다채로운 수상경력을 통해 본인의 기획력을 입증하고 있음.
4	황〇〇	고 2	아동은 일반위탁아동으로 사교적이고 낙천적으로, 진로목표인 여군이 되기 위해 학업에 열중하고 있으며, 체육한마당 도우미, 축제 학생준비위원 등 다양한 분야에 참여하고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음.
5	조00	J 3	아동은 조모와 함께 생활하며 학교 역사 탐방 동아리 부장을 역임하는 등 리더십을 발휘하고 학교에서 품행모범상을 받기도 하였음. 교우관계도 원만할 뿐 아니라 품행모범상 등 다양한 수상경력도 보유하고 있음.
6	김〇〇	고 2	아동은 외조부모와 함께 생활하며 효심이 깊은 모습을 보이고 있음. 지역사회 재능기부의 일환으로 매달 초등·중학생들에게 과학을 가르치는 봉사활동을 하고 장애인권 소감문 대회 등에도 적극 참여할 뿐 아니라 학교에서 효행상과 모범상을 수상함.
7	고ㅇㅇ	고 1	아동은 현재 중고등학교 체육선생님이 되기 위해 성적관리 뿐 아니라 부반장을 역임하는 등 학교생활에서도 모범적임. 중학교 시절 방학이면 초등학생들의 훈련을 돕고, 또래와의 소통이나 관계에 있어서도 리더십을 발휘함.

□ 가정위탁 수기 공모전 장관상 수상자(2명)

연번	성명	소속/구분	수상작	수상개요
1	김ㅇㅇ	대구가정위탁지원 센터/위탁아동	우리가족은(시)	위탁가정내 가족구성원의 성도 생김새도 혈액형도 다르지만 위탁가정이 함께 행복할 것을 표현
2	고은경	제주가정위탁지원 센터/종사자	봄, 여름, 가을, 겨울 (소설)	가정위탁 종사자가 쓴 편지형식의 단편 소설로 위탁보호 종결아동이 성공적인 자립 이후 가정위탁지원센터 상담원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내용











참고 2 가정위탁사업 개요

□ 사업내용

- (목적) 보호대상이동*의 조속한 **친가정 복귀 지원**을 위해 위탁가정의 가정적 분위기에서 보호·양육함으로써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 면원세미만의 이동 중 그 보호자가 이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게나 양육능력이 없는 경우의 이동
- (정의) 보호대상아동의 양육을 위해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으며,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아동복지법」제3조)
- (위탁유형) 일반가정위탁, 대리양육(친·외조부모) 및 친인척 위탁(8촌 이내 혈족 등)

년도	계(명)	일반가정	대리양육	친인척	비고
2017	11,975	937	7,942	3,096	
2018	11,111	913	7,412	2,786	
2019	10,334	905	6,871	2,558	

□ 그 간의 추진경과

○ 2003년 : 가정위탁지원센터 전국 확대(16개 시·도, 총 17개소)

○ 2006. 1월 :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 2010. 1월 : 입양 및 가정위탁 아동 심리치료비 지원

○ 2012. 8월 : 「아동복지법」개정(시·군·구 가정위탁지원센터 설치근거 규정,

가정위탁보호 아동 자립지원 근거 규정)

○ 2016. 3월 : 「아동복지법」개정(가정위탁지원센터를 아동복지시설에 포함)

□ (추진체계) 복지부 → 지자체, 가정위탁지원센터(17개소)* → 위탁가정 ★ 위탁가정 발굴, 위탁이동 · 가정에 대한 상담 · 교육 · 사례관리 · 자립지원 및 친가정 복귀 지원

① 가정위탁 보호신청

② 아동 및 위탁가정 환경조사

③ 가정위탁보호 결정·통보

④ 사례관리

⑤ 가정위탁 보호 종결

시군구(읍면동)

(가정위탁 보호신청)

친권자, 후견인 등 보호자 → 아동거주지 시·군·구 또는 읍·면·동

기정위탁보호 희망자

신청서를 지자체

또는 가정위탁지

원센터에 제출

지자체

- 초기상담
- 욕구조사
- 건강검진, 심리검사, 친가정 및 아동상황 점검
- 지역가정위탁센터에 위탁가정 연계 의뢰
- 센터 추천 위탁가정에 대한 범죄경력 등 조회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

(위탁부모 선정)

시·군·구에서 의뢰된 아동에 맞는 위탁부모를 찾아 선정

지자체

(가정위탁 보호 결정)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아농목지심의위원³ 통해 보호 결정

(보호 결정 통보 및 관련서류 발송)

·관할 가정위탁지원센터 및 위탁가정 소재 지자체에 통보

지자체/ 가정위탁지원센터

(**상담 및 관리**)

위탁아동, 위탁가정, 친가정에 **상담 정례화**

(복지서비스 제공) 자립지원, 심리치료, 결연 후원서비스 등 제공·연계 (교육)

,__., 위탁부모·친가정, 종사자, 공무원 등 일반 국민 대상

지자체/ 가정위탁지원센터

시·군·구에 아동 보호조치의 종료(퇴소)신청서/아동가정복귀 신청서 제출

(종결 또는 연장)

시고는 종을 또 보기가 영장

(**사후관리**) 사례관리 또는 자립지원서비스 제공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 다양한 사유로 부모와 함께 살 수 없는 경우 일정기간 위탁가정에서 보호, 양육하는 제도 입니다.



☆ 위탁가정이 되려면?











적합한 소득

종교 자유 인정

25세 이상 아동과 나이차 60세 미만

범죄전력 및 정신질환No

자녀수 4명이하 (위탁아동 포함)

☆ 위탁가정이 되고 싶어요!



☆ 가정위탁, 이런 혜택이 있어요



양육보조금 아동 연령별 월 30~50만원 차등지원



위탁아동 상해보험 가입 및 심리치료 지원



디딤씨앗통장 아동 적립시 국가에서 월 최대 5만원 매칭 지원



위탁아동 생계급여(약53만원), 의료·교육급여 등

이 외에도 위탁아동 소득공제, 전세주택 지원, 에너지바우처, 자립지원 등의 지원이 있습니다.

가정위탁, 우리가 함께 합니다. 가정위탁지원센터 /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 1577-1406













보호대상아동의 가정보호를 위한

가정위탁 6대 과제

'2024년까지 가정위탁보호율 37%까지 확대



예비 일반위탁부모 발굴

 보호필요아동에 대한 가정위탁 보호 활성화를 위해 일반위탁부모 확대

요보호아동 가정위탁 배치율

19년 24% > 24년 37%



위탁가정의 지원 현실화

- 아동용품구입비* 지원 기준 신설 *초기 아동 적응 및 양육 물품 구입 등 소요비용
- 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연령별 차등지원

	2019년	2020년
아동용품구입비	지자체상이	1회 100만원
양육보조금	20만원)	30~50만원 차등지급(매월)



전문가정위락제도* 도입 및 전국적 확대·시행

• 전문가정위탁제도 법제화 추진 및 지원기준 마련 *학대피해아동, 영아 등의 맞춤형 보호를 위해 전문위탁부모 양성 및 지원 가이드라인 제정



법률지원서비스 강화

- 후견인제도* 활성화
 - *위탁아동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 행사가 불가능할 경우 아동의 복리를 위해 위탁부모 등을 미성년 후견인으로 선임 추진(지자체장 신청)
- 법률구조지원 강화(한국가정법률상담소 연계, 법률심판 지원)



친가정(부모) 복귀 지원

- 위탁아동 → 부모 간 면접교섭권을 형제자매 등 가족까지 확대
- 친가정 복귀 프로그램 강화 및 친부모 아동 교류 프로그램, 운영 개발



가정위탁 인프라 확충

- 가정위탁지원센터 분소 설치 추진
- 부족한 인력 충원 유도













참고 3 가정위탁아동 주요 지원내용

큔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예산	비고
	상해보험료	가정위탁보호아동	연 6만8천5백원	비생지(14	
	심리검사 치 료비	국내입양·기정위탁보호이동 중 과잉행동장애, 정서불안장애 등 상담·치료가 필요한 이동	검사비 최대 30만원(1회) 치료비 월 20만원 이내(12개월)	비병자11	
	양육보조금	가정위탁보호아동	연령별 월 30~50만원 이상(권고)	비비지	지방이양 시업
	전문아동 보호비	전문위탁부모 (영아, 경계선지능, 학대피해 이동)	월 100만원 이상(권고)	ᄖᆁᅐ	지방이양 시업
	아동용품 구입비	가정위탁 초기 배치 아동	1인당 100만원지급 (권고)	비비지	지방이양 시업
보	생계·의료·교 육급 여	가정위탁보호아동	생계급여 월 512천원 의료·교육급여는 개인별 상이	비생자(14	위탁이동 별고/ 간주 간주
호	아동수당	만 7세 미만 아동	월 10만원	비생자(14	
중	가정양육 수당	만 0~6세 아동 (보육료, 유아학비,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미지원 아동)	만 0세 월 20만원 만 1세 월 15만원 만 2~6세 월 10만원	비생자뚜	
	디딤씨앗 통장	가정위탁보호아동	월 5만원 내에서 이동적립(후원)금액과 동일금액 매칭지원	비생자(14	
	전세자금	월평균소득 일정수준 이하의 무주택인 대리, 친·인척위탁기정, 보호종료 5년이내 기정위틱종결이동	전세자금 또는 임대보증금 지원(대출)	_	국토 교통부
	대학등록금	가정위탁보호아동	500만원이상(권고)	旭	지방이양 사업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만 18세 미만의 위탁이동	1인당 150만원 기본공제 및 특별세액공제(교육) 등		
	자립수당	18세 이상 보호종료아동	월 30만원	비생지(14	
	자립정착금	18세 이상 보호종료아동	500만원이상(권고)	쟤배	지방이양 사업
보	주거지원 및 맞춤형 사례관리	18세 이상 보호종료아동	나청년매입임대 주택 (월세·보증금 무료, 관비만 부담) 및 사례관리(월 20만원) 서비스 통합 제공	바바다	
보호종료	서비스 18세 이상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18세 이상 18세		t 시 우선순위 부여, 0년 거주 등)	_	국토 교통부
	진로·취업 지원	18세 이상 보호종료아동 대성 교육비(아름다운재단) 및 어학 고용노동부의 청년구직활동지원 내일배움카드 등 취업지원표	_		
	자립 관련 심리지원	18세 이상 보호종료아동 대상 운영(자립강의, 봉사활동, 멘토 지원), 숲속힐링교실 운영(심	_		











참고 4 각 시·도별 가정위탁사업 지원내용

	보호필요아동 보호조치 (2018.12월기준)				위탁아동 지원				인프라 (개소, 명)	
시도	계	시설 보호	가정	기타 (명,%)	아동용품 구입비 ('20.3월)	양육보조금 ('20.3월)	심리 치료 ('19년)	상해 보험 ('19년)	가정 위탁 지원	예비 위탁 부모
	(명,%)	(명,%)	(명,%)	(3,7-7	단가 (천원)	단가 (천원)	인원수 (명)	인원수 (명)	센터	('19. 11월)
계	3,918 (100)	2,449 (62.5)	937 (23.9)	532 (13.6)		120~200	991	8,078	17	264
서울	1,003 (100)	559 (55.7)	60 (6.0)	384 (38.3)	1,000(민)	200	80	631	1	11
부산	176 (100)	115 (65.3)	51 (29.0)	10 (5.7)	300(민)	200	108	416	1	23
대구	189 (100)	150 (79.4)	18 (9.5)	21 (11.1)	_	180	73	183	1	11
인천	133 (100)	69 (51.9)	48 (36.1)	16 (12)	500(지), 500(민)	200	43	417	1	13
광주	136 (100)	80 (58.8)	48 (35.3)	8 (5.9)	1,000(민)	200	132	281	1	9
대전	81 (100)	65 (80.2)	9 (11.1)	7 (8.7)	_	200	12	147	1	19
울산	60 (100)	21 (35.0)	37 (61.7)	2 (3.3)	300(민)	200	29	180	1	7
북부	726	505	182	39	300(민)	200	86	1,547	1	11
경기 남부	(100)	(69.6)	(25.1)	(5.3)	1,000(민)				1	27
강원	107 (100)	59 (55.2)	39 (36.4)	9 (8.4)	_	150~200	33	775	1	5
충북	126 (100)	77 (61.1)	44 (34.9)	5 (4.0)	300(민)	150~200	44	334	1	17
충남	222 (100)	124 (55.9)	86 (38.7)	12 (5.4)	_	120~200	54	432	1	27
전북	321 (100)	229 (71.3)	86 (26.8)	6 (1.9)	_	200	66	495	1	12
전남	265 (100)	184 (69.4)	80 (30.2)	1 (0.4)	_	200	17	887	1	14
경북	169 (100)	85 (50.3)	83 (49.1)	1 (0.6)	_	200	154	600	1	6
경남	122 (100)	76 (62.2)	43 (35.3)	3 (2.5)	1,000(민)	150	13	573	1	30
제주	66 (100)	39 (59.1)	19 (28.8)	8 (12.1)	-	120	41	149	1	20
세종	16 (100)	12 (75.0)	4 (25.0)	_	_	200	6	31	-	2

- * 예비위탁부모 현황 출처 : 아동권리보장원(구.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 * (지): 지자체 지원, (민): 법인 등 민간 지원











참고 5 전국 가정위탁지원센터 현황

기관명		주 소	연 락 처	홈페이지	운영법인	
아동권리보장원		서울 종로구 삼봉로 71 종로GFI워 6층	전화: 02)6283-0200 팩스: 02)6283-0499	www.ncrc.or.kr	-	
서울	가정위탁 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양천구 화곡로 47 어린이재단 양천별관 4층	전화: 02)325-9080 팩스: 02)325-2664	www.seoul-foster.or.kr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부산	가정위탁 지원센터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657, 동원빌딩 3층	전화: 051)758-8801 팩스: 051)752-8810	www.busan.sc.or.kr	세이브더 칠드런코리아	
대구	가정위탁 지원센터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 291, 1층	전화: 053)656-2510 팩스: 053)626-2510	www.dgfoster.or.kr	세이브더 칠드런코리아	
인천	가정위탁 지원센터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흥로 294번길 4 추인타워 8층	전화: 032)866-1226 팩스: 032)504-1226	www.icfoster.or.kr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	가정위탁 지원센터	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 311번길 15	전화: 062)351-1206 팩스: 062)261-2141	www.gjw.or.kr/foster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대전	가정위탁 지원센터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46 대림빌딩 804호	전화: 042)242-5240 팩스: 042)242-5280	www.djfoster.or.kr	(사)한국수양 부모협회	
울산	가정위탁 지원센터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16 안강빌딩 4층	전화: 052)286-1548 팩스: 052)286-4675	ulsan.goodneighbors.kr	굿네이버스	
경기	가정위탁 지원센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14번길 9 서린프라자 7층	전화: 031)234-3980 팩스: 031)234-2353	www.ggfoster.or.kr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기 북부	가정위탁 지원센터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19번길 30-11	전화: 031)821-9117 팩스: 031)840-2828	www.kgfoster.or.kr	대한사회복지회	
강원	가정위탁 지원센터	강원도 춘천시 후석로 379번길 27, 2층	전화: 033)255-1406 팩스: 033)257-1407	www.foster-gangwon.or.kr	YMCA	
충북	가정위탁 지원센터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서현중로 66, 404호	전화: 043)250-1226 팩스: 043)238-7757	www.cbfoster.or.kr	세이브더 칠드런코리아	
충남	가정위탁 지원센터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두정중 10길 8 희망빌딩 4층	전화: 041)577-1226 팩스: 070)5005-4699	www.fosterservice.or.kr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북	가정위탁 지원센터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팔달로 232 청목빌딩 6층	전화: 063)288-7770 팩스: 063)288-7780	www.jbfc.or.kr	세이브더 칠드런코리아	
전남	가정위탁 지원센터	전라남도 목포시 해양대학로 28	전화: 061)279-1225 팩스: 061)245-1524	www.jnfoster.org	공생복지재단	
경북	가정위탁 지원센터	경북 경산시 진량읍 공단로 522, 2층	전화: 053)813-3953 팩스: 053)812-3953	www.gbfoster.or.kr	(사)한국아동 복지협회	
경남	가정위탁 지원센터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271(봉곡동) 한마음타워 5층	전화: 055)237-1226 팩스: 055)716-0080	www.knfoster.or.kr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주	가정위탁 지원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22, 3층	전화: 064)747-3273 팩스: 064)747-3272	www.jeju-foster.or.kr	(사)제주 상담센터	



